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기능 통합,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 신규직위 지정: 국제협력특보

나. 과 조정

1) 신설(분리): 문화종무과 → 문화정책과 + 종교협력과

2) 폐지(통합):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특별사법경찰단

다. 정원 조정 : 이체 198, 직렬조정 29, 직급조정 7

※ 총 정원(16,244명): 변동없음

라. 사무 조정

1) 신설: (보건의료과) 한의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과)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등

2) 변경: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기국제공항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3) 이관: (정책홍보담당관)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민소통담당관)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마. 기타사항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조정(별표3)

※ 119안전센터 6개소 신설(안산 상록수, 평택 신평, 시흥 배곧, 화성 새솔, 여주 금사, 연천 군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mwsc8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두고, 경제부지사”를 “두고,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특보를 두며, 경제부지사”로, “두며, 주요 도정”을 “두고, 주요 도정”으로, “두고, 정책수석ㆍ대외협력보좌관ㆍ행정수석ㆍ기회경기수석ㆍ정무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을 “두며, 정책수석ㆍ대외협력보좌관ㆍ행정수석ㆍ기회경기수석ㆍ국제협력특보ㆍ정무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3호 중 “관련 민ㆍ군통합공항 계획”을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협력”을 “토론회, 워크숍 등”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6.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 · 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9.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고제작 ·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광고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3.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ㆍ확산에 관한 사항

21.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23.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25.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6.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기획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안전특별점검단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ㆍ민생특별사법경찰단ㆍ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안전기획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안전특별점검단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ㆍ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안전기획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안전특별점검단장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ㆍ민생특별

사법경찰단장”을 “안전기획과장 · 사회재난과장 · 자연재난과장 · 안전특별점검단장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 특별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을 “특별사법경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13.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정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과학적 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불공정 범죄 신고 · 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압수수색 · 조사 및 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19.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미스터리쇼핑 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에 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 · 수사에 관한 사항

35.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 · 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한의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7.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8.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19.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종무과ㆍ콘텐츠산업과ㆍ예술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산업과”를 “문화정책과ㆍ종교협력과ㆍ콘텐츠산업과ㆍ예술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종무과장은”을 “문화정책과장ㆍ종교협력과장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종무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제26호 및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④ 종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사찰의 지정 · 지원 ·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유교, 향교, 민족종교 및 기타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종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제3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방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경기소방 역사사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지 · 관리”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예방소방행정통계”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항 (「소방기본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제외)”를 “사

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 소방시설(주택 · 공공시설 등)” 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2호 중 “사항(교통사고 포함)” 을 “사항” 으로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지 · 관리” 를 “관리”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제4항제11호 중 “예방소방행정통계” 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기초 소방시설 (주택 · 공공시설 등)” 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 을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 · 처리”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4호를 제4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4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제4항제1호 중 “화재예방”을 “화재예방, 안전관리”로, “유지ㆍ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예방소방행정통계”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초소방시설(주택ㆍ공공시설 등)”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6제1항 중 “체험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지원팀장”을 각각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질병진단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바이오연구팀ㆍ해외전염병팀ㆍASF대응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ㆍ조류질병대응팀ㆍ서부축산물검사소”를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질병진단팀ㆍ해외전염병팀ㆍASF대응팀ㆍ조류질병대응팀ㆍ바이오연구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ㆍ서부축산물검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방역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바이오연구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ASF대응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ㆍ서부축산물검사소장”을 “가축방역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ASF대응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ㆍ바이오연구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ㆍ서부축산물검사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

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0항, 제9항, 제6항, 제7항, 제11항, 제1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표 중 부천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 등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기도정원관리기관별직급 · 직렬별정원표(제81조제1항관련)

(단위: 명)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합계	16,244	3,823	371	11,390	37	575	48
정무직	5	1	-	-	-	-	4
도지사	1	1	-	-	-	-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2	-	-	-	-	-	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2	-	-	-	-	-	2
일반직	4,348	3,232	364	133	37	538	44
1~2급	1	-	-	-	1	-	-
관리관.이사관	1	-	-	-	1	-	-
2~3급	5	4	1	-	-	-	-
이사관.부이사관	5	4	1	-	-	-	-
3급	27	23	-	1	1	2	-
부이사관	27	23	-	1	1	2	-
3~4급	1	1	-	-	-	-	-
부이사관.기술서기관	1	1	-	-	-	-	-
4급	182	137	17	4	3	19	2
행정	59	39	10	4	2	2	2
기술	9	5	-	-	-	4	-
행정.기술	104	89	7	-	1	7	-
기술.농업연구	2	-	-	-	-	2	-
기술.녹지연구	2	1	-	-	-	1	-
기술.수의연구	4	2	-	-	-	2	-
기술.해양수산연구	2	1	-	-	-	1	-
5급	835	649	52	18	7	101	8
행정	333	253	43	13	4	12	8
사서	2	2	-	-	-	-	-
공업	9	8	-	-	-	1	-
농업	6	5	-	-	-	1	-
녹지	9	7	-	-	-	2	-
수의	3	3	-	-	-	-	-
해양수산	7	5	-	-	-	2	-
보건	1	1	-	-	-	-	-
의무	4	4	-	-	-	-	-
간호	1	1	-	-	-	-	-
환경	3	2	-	-	-	1	-
시설	67	52	-	-	2	13	-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 소	사업 소	합의제 행정기관
방송통신	4	4	-	-	-	-	-
행정.사회복지	30	30	-	-	-	-	-
행정.사서	4	4	-	-	-	-	-
행정.속기	1	-	1	-	-	-	-
행정.공업	24	23	1	-	-	-	-
행정.농업	17	14	-	2	-	1	-
행정.녹지	4	3	-	-	-	1	-
행정.수의	3	2	-	-	-	1	-
행정.해양수산	3	2	-	-	-	1	-
행정.보건	7	7	-	-	-	-	-
행정.식품위생	1	1	-	-	-	-	-
행정.환경	18	12	-	-	-	6	-
행정.시설	89	75	3	2	1	8	-
행정.방재안전	1	1	-	-	-	-	-
행정.방송통신	8	8	-	-	-	-	-
공업.환경	8	3	-	-	-	5	-
공업.시설	8	6	-	-	-	2	-
공업.운전	1	1	-	-	-	-	-
농업.녹지	1	1	-	-	-	-	-
농업.수의	5	5	-	-	-	-	-
농업.환경	1	-	-	-	-	1	-
농업.시설	3	3	-	-	-	-	-
농업.농업연구	3	-	-	-	-	3	-
녹지.환경	1	1	-	-	-	-	-
녹지.녹지연구	7	2	-	-	-	5	-
수의.수의연구	20	4	-	-	-	16	-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	-	-	-	3	-
보건.간호	3	3	-	-	-	-	-
보건.식품위생	1	1	-	-	-	-	-
약무.간호	1	1	-	-	-	-	-
환경.시설	2	-	-	-	-	2	-
환경.환경연구	1	1	-	-	-	-	-
시설.방재안전	2	2	-	-	-	-	-
방송통신.방재안전	1	1	-	-	-	-	-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	-	-	-	-
행정.공업.환경	6	5	-	-	-	1	-
행정.공업.시설	29	28	-	-	-	1	-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	-	-	-	-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	-	-	-	-
행정.농업.수의	4	2	1	-	-	1	-
행정.농업.환경	1	1	-	-	-	-	-
행정.농업.시설	3	3	-	-	-	-	-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	-	-	-	-
행정.녹지.시설	4	3	-	-	-	1	-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	-	-	-	-
행정.보건.간호	3	3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	-	-	-	-
행정.환경.시설	7	3	1	-	-	3	-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	-	-	-	-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	-	-	-	-
행정.시설.학예연구	1	1	-	-	-	-	-
공업.농업.환경	1	-	-	-	-	1	-
농업.녹지.수의	1	1	-	-	-	-	-
농업.수의.수의연구	3	2	-	-	-	1	-
농업.환경.시설	1	1	-	-	-	-	-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1	-	-	1	-	-	-
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3	-	-	-	-	3	-
보건.의무.약무	2	2	-	-	-	-	-
보건.의무.간호	2	2	-	-	-	-	-
보건.약무.간호	3	3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2	1	-	-	-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	1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6	4	-	-	-	2	-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1	1	-	-	-	-	-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	-	-	-	-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	-	-	-	-
보건.식품위생.약무.간호	1	1	-	-	-	-	-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	-	-	-	-
6급	1,665	1,222	180	53	14	180	16
행정	679	474	145	24	6	15	15
세무	12	12	-	-	-	-	-
전산	43	40	1	1	-	1	-
사회복지	8	8	-	-	-	-	-
사서	4	4	-	-	-	-	-
속기	8	-	8	-	-	-	-
방호	2	2	-	-	-	-	-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직렬(직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 소	사업 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업	58	38	2	7	-	11	-
농업	18	18	-	-	-	-	-
녹지	20	17	-	-	-	3	-
수의	38	8	-	-	-	30	-
해양수산	15	9	-	-	-	6	-
보건	9	8	-	1	-	-	-
간호	1	1	-	-	-	-	-
환경	25	15	-	-	1	9	-
시설	208	177	2	-	3	26	-
방송통신	24	21	1	1	-	1	-
위생	4	2	-	1	-	1	-
시설관리	6	3	-	2	-	1	-
운전	12	8	1	1	-	2	-
행정.세무	16	14	1	-	1	-	-
행정.전산	18	12	2	2	1	-	1
행정.사회복지	39	37	-	-	-	2	-
행정.사서	5	5	-	-	-	-	-
행정.공업	37	33	2	-	-	2	-
행정.농업	12	12	-	-	-	-	-
행정.녹지	4	1	-	-	-	3	-
행정.수의	5	3	-	-	-	2	-
행정.해양수산	5	3	-	-	-	2	-
행정.보건	9	9	-	-	-	-	-
행정.간호	1	1	-	-	-	-	-
행정.환경	9	3	-	-	-	6	-
행정.시설	87	75	3	-	1	8	-
행정.방재안전	2	2	-	-	-	-	-
행정.방송통신	1	1	-	-	-	-	-
행정.기록연구	1	-	1	-	-	-	-
세무.공업	1	1	-	-	-	-	-
전산.사서	1	1	-	-	-	-	-
전산.환경	1	-	-	-	-	1	-
전산.공업	1	1	-	-	-	-	-
전산.시설	1	1	-	-	-	-	-
전산.방송통신	3	2	1	-	-	-	-
사회복지.보건	1	1	-	-	-	-	-
공업.환경	11	7	-	-	-	4	-
공업.시설	9	6	1	1	1	-	-
농업.녹지	1	1	-	-	-	-	-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 소	사업 소	합의제 행정기관
농업.수의	5	5	-	-	-	-	-
농업.해양수산	1	1	-	-	-	-	-
농업.환경	2	-	-	-	-	2	-
농업.시설	2	2	-	-	-	-	-
농업.농업연구	7	-	-	-	-	7	-
녹지.시설	4	1	-	-	-	3	-
녹지.녹지연구	1	-	-	-	-	1	-
수의.수의연구	17	3	-	-	-	14	-
해양수산.환경	1	1	-	-	-	-	-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	-	-	-	3	-
보건.식품위생	1	1	-	-	-	-	-
보건.약무	3	3	-	-	-	-	-
보건.간호	8	7	-	1	-	-	-
보건.환경	5	4	-	-	-	1	-
보건.보건연구	1	1	-	-	-	-	-
환경.환경연구	6	2	-	3	-	1	-
시설.방재안전	8	8	-	-	-	-	-
행정.전산.공업	1	1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6	5	1	-	-	-	-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	-	-	-	-
행정.공업.시설	13	10	1	-	-	2	-
행정.공업.환경	2	2	-	-	-	-	-
행정.농업.녹지	1	1	-	-	-	-	-
행정.농업.수의	3	2	1	-	-	-	-
행정.농업.환경	4	4	-	-	-	-	-
행정.농업.시설	2	2	-	-	-	-	-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	-	-	-	-
행정.보건.간호	5	5	-	-	-	-	-
행정.보건.환경	4	4	-	-	-	-	-
행정.환경.시설	2	-	1	-	-	1	-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	-	-	-	-
공업.농업.환경	3	3	-	-	-	-	-
농업.녹지.녹지연구	1	1	-	-	-	-	-
농업.수의.수의연구	1	1	-	-	-	-	-
농업.수의.해양수산	7	7	-	-	-	-	-
농업.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	-	-	-	-
수의.보건.식품위생	4	4	-	-	-	-	-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 소	사업 소	합의제 행정기관
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1	-	-	-	-	1	-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	1	-	-	-	-	1	-
보건.약무.간호	7	7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	-	-	-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	1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	-	-	-	-
수의.보건.약무.간호	1	1	-	-	-	-	-
건축운영	1	-	-	-	-	1	-
통신운영	4	2	-	2	-	-	-
전화상담운영	1	1	-	-	-	-	-
전기운영	5	-	1	2	-	2	-
기계운영	7	2	2	2	-	1	-
열관리운영	2	-	-	2	-	-	-
사무운영	13	9	1	-	-	3	-
7급	1,417	1,055	100	41	8	196	17
행정	594	469	64	19	3	26	13
세무	16	16	-	-	-	-	-
전산	28	28	-	-	-	-	-
사회복지	11	11	-	-	-	-	-
사서	6	4	1	1	-	-	-
속기	11	-	11	-	-	-	-
방호	7	5	2	-	-	-	-
공업	19	12	1	2	-	4	-
농업	17	13	-	1	-	3	-
녹지	24	16	-	-	-	8	-
수의	50	10	-	-	-	40	-
해양수산	14	9	-	-	-	5	-
보건	4	4	-	-	-	-	-
의료기술	1	1	-	-	-	-	-
약무	1	1	-	-	-	-	-
간호	4	4	-	-	-	-	-
환경	31	22	-	-	-	9	-
시설	130	103	1	2	1	23	-
방재안전	2	2	-	-	-	-	-
방송통신	19	14	2	1	-	2	-
위생	5	2	1	2	-	-	-
시설관리	8	5	-	1	-	2	-
운전	26	10	3	3	1	9	-
행정.세무	9	9	-	-	-	-	-
행정.전산	19	11	4	1	-	1	2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사회복지	40	38	1	1	-	-	-
행정.사서	8	7	-	1	-	-	-
행정.속기	1	1	-	-	-	-	-
행정.공업	34	32	1	-	-	1	-
행정.농업	13	10	-	-	-	3	-
행정.녹지	2	-	-	-	-	2	-
행정.수의	2	2	-	-	-	-	-
행정.해양수산	3	2	-	-	-	1	-
행정.보건	12	12	-	-	-	-	-
행정.환경	11	8	1	-	-	2	-
행정.시설	54	46	3	1	1	3	-
행정.방재안전	4	4	-	-	-	-	-
행정.방송통신	2	1	-	-	1	-	-
전산.농업	1	1	-	-	-	-	-
전산.환경	3	1	-	-	-	2	-
전산.시설	1	1	-	-	-	-	-
전산.방송통신	4	4	-	-	-	-	-
사회복지.보건	2	2	-	-	-	-	-
공업.수의	1	1	-	-	-	-	-
공업.환경	11	6	-	-	-	5	-
공업.시설	20	14	-	-	1	5	-
농업.수의	7	3	-	-	-	4	-
농업.해양수산	1	1	-	-	-	-	-
농업.시설	3	3	-	-	-	-	-
농업.농업연구	2	-	-	-	-	2	-
녹지.시설	1	1	-	-	-	-	-
녹지.녹지연구	3	2	-	-	-	1	-
수의.수의연구	2	1	-	-	-	1	-
수의.보건연구	7	-	-	-	-	7	-
해양수산.시설	1	1	-	-	-	-	-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4	-	-	-	-	4	-
보건.간호	11	11	-	-	-	-	-
보건.환경	2	1	-	-	-	1	-
보건.보건연구	7	4	-	3	-	-	-
보건.식품위생	2	2	-	-	-	-	-
환경.농업	1	-	-	-	-	1	-
환경.시설	7	3	-	-	-	4	-
시설.방재안전	15	15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	-	-	-	-	2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 소	사업 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	-	-	-	-
행정.공업.시설	6	4	-	-	-	2	-
행정.농업.녹지	1	1	-	-	-	-	-
행정.농업.수의	2	1	1	-	-	-	-
행정.농업.환경	1	-	-	-	-	1	-
행정.녹지.시설	2	2	-	-	-	-	-
행정.보건.간호	1	1	-	-	-	-	-
행정.환경.시설	6	2	-	-	-	4	-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	-	-	-	-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	-	-	-	-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	1	-	-	-	-	1	-
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1	1	-	-	-	-	-
보건.약무.간호	3	3	-	-	-	-	-
보건.간호.환경	1	1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	1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	-	-	-	-
수의.보건.약무.간호	1	1	-	-	-	-	-
전화상담운영	1	1	-	-	-	-	-
농림운영	1	-	-	-	-	1	-
사육운영	1	-	-	-	-	1	-
사무운영	20	11	2	2	-	5	-
8급	201	133	13	14	2	39	-
행정	30	18	7	4	-	1	-
세무	1	1	-	-	-	-	-
전산	6	5	1	-	-	-	-
속기	4	1	3	-	-	-	-
방호	2	1	1	-	-	-	-
공업	22	8	-	4	-	10	-
농업	5	2	-	-	-	3	-
해양수산	19	11	-	-	-	8	-
보건	4	4	-	-	-	-	-
환경	2	1	-	1	-	-	-
시설	54	44	-	-	1	9	-
방재안전	2	2	-	-	-	-	-
방송통신	4	3	-	1	-	-	-
시설관리	1	-	-	1	-	-	-
운전	10	5	1	1	1	2	-
행정.세무	4	4	-	-	-	-	-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사회복지	2	2	-	-	-	-	-
행정.공업	1	1	-	-	-	-	-
행정.시설	4	3	-	-	-	1	-
행정.방재안전	2	2	-	-	-	-	-
전산.방송통신	1	-	-	1	-	-	-
공업.환경	4	1	-	-	-	3	-
공업.시설	4	2	-	1	-	1	-
농업.시설	1	1	-	-	-	-	-
보건.간호	2	2	-	-	-	-	-
보건.보건연구	1	1	-	-	-	-	-
환경.시설	2	1	-	-	-	1	-
시설.방재안전	3	3	-	-	-	-	-
행정.공업.시설	1	1	-	-	-	-	-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	-	-	-	-
사무운영	2	2	-	-	-	-	-
9급	6	3	-	1	1	-	1
행정	2	2	-	-	-	-	-
운전	3	1	-	1	-	-	1
시설	1	-	-	-	1	-	-
전문경력관	8	5	1	1	-	1	-
가군	1	1	-	-	-	-	-
홍보요원	1	1	-	-	-	-	-
나군	7	4	1	1	-	1	-
종자정선기사	1	-	-	-	-	1	-
농산물안전분석요원	1	-	-	1	-	-	-
영상음향시스템운영요원	1	-	1	-	-	-	-
재난상황관리시스템운영요원	1	1	-	-	-	-	-
재난안전관리요원	3	3	-	-	-	-	-
별정직	25	18	7	-	-	-	-
1급상당	1	1	-	-	-	-	-
관리관.별정	1	1	-	-	-	-	-
4급상당	3	-	3	-	-	-	-
별정	1	-	1	-	-	-	-
행정.별정	2	-	2	-	-	-	-
5급상당	12	11	1	-	-	-	-
별정	12	11	1	-	-	-	-
6급상당	7	5	2	-	-	-	-
별정	7	5	2	-	-	-	-

직종,직급,직렬(직위) \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7급상당	2	1	1	-	-	-	-
별정	2	1	1	-	-	-	-
연구직	333	10	-	290	-	33	-
연구관	68	1	-	66	-	1	-
학예연구	1	-	-	-	-	1	-
농업연구	21	-	-	21	-	-	-
보건연구	21	-	-	21	-	-	-
환경연구	22	-	-	22	-	-	-
보건연구.환경연구	2	-	-	2	-	-	-
행정.시설.학예연구	1	1	-	-	-	-	-
연구사	265	9	-	224	-	32	-
학예연구	7	5	-	-	-	2	-
기록연구	4	4	-	-	-	-	-
농업연구	54	-	-	50	-	4	-
녹지연구	9	-	-	-	-	9	-
수의연구	4	-	-	-	-	4	-
해양수산연구	9	-	-	-	-	9	-
보건연구	80	-	-	80	-	-	-
환경연구	94	-	-	94	-	-	-
수의연구.보건연구	2	-	-	-	-	2	-
녹지.녹지연구	2	-	-	-	-	2	-
지도직	38	-	-	38	-	-	-
지도관	12	-	-	12	-	-	-
농촌지도	12	-	-	12	-	-	-
지도사	26	-	-	26	-	-	-
농촌지도	26	-	-	26	-	-	-
소방직	11,495	562	-	10,929	-	4	-
소방준감	9	6	-	3	-	-	-
소방정	45	7	-	38	-	-	-
소방령	337	60	-	276	-	1	-
소방경	801	82	-	718	-	1	-
소방위	894	149	-	744	-	1	-
소방장	1,699	158	-	1,540	-	1	-
소방교	2,669	92	-	2,577	-	-	-
소방사	5,041	8	-	5,033	-	-	-

[별표 3]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제83조제1항 관련)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수원 소방서	정자 119안전센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12 (정자동)	장안구 영화동, 조원1·2동, 정자2·3동, 송죽동
	원천 119안전센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349(원천동)	영통구 원천동, 매탄1·2·3·4동
	파장 119안전센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308(이목동)	장안구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이의 119안전센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33(이의동)	영통구 광교1·2동, 장안구 연무동
	영통 119안전센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25(영통동)	영통구 영통1·2·3동, 망포1·2동, 화성시 진안동 일부(「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역)
	119구조대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12(정자동)	장안구, 영통구
	119구급대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12(정자동)	장안구, 영통구
수원남부 소방서	남부 119안전센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	권선구 권선1·2동, 곡선동, 세류2동 일부(장지동), 팔달구 인계동
	매산 119안전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매산로 3가)	권선구 세류2동 일부(세류동), 세류3동 팔달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행궁동 일부 (팔달로1·2·3가, 남창동, 영동, 구천동, 중동, 신풍동)
	지만 119안전센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우만동)	팔달구 지동, 우만1·2동, 행궁동 일부(남수동,북수동,장안동,매향동)
	서둔 119안전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48(서둔동)	권선구 서둔동, 구운동, 팔달구 화서1·2동
	고색 119안전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14(고색동)	권선구 평동, 세류1동
	호매실 119안전센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4(금곡동)	권선구 입북동, 호매실동, 금곡동
	119구조대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69(권선동)	권선구, 팔달구
	119구급대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	권선구, 팔달구
성남 소방서	하대원 119안전센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64(하대원동)	수정구 수진1·2동, 중원구 중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일부(여수동)
	신흥 119안전센터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1(신흥동)	수정구 신흥1·2·3동, 중원구 중 중앙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상대원 119안전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9(상대원동)	중원구 상대원1·2·3동, 도촌동 일부(도촌동, 갈현동)
	단대 119안전센터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1번길7-2 (단대동)	중원구 은행1·2동, 금광1·2동, 수정구 중 양지동, 단대동
	위례 119안전센터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3(창곡동)	수정구 복정동, 위례동, 산성동
	태평 119안전센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12(태평동)	수정구 태평1·2·3·4동
	고등 119안전센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31(고등동)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119구조대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64(하대원동)	수정구, 중원구
	119구급대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64(하대원동)	수정구, 중원구
분당 소방서	서현 119안전센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서현동)	분당구 분당동, 서현1·2동, 수내1·2동, 이매1동
	판교 119안전센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62(삼평동)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일부(궁내동)
	수내 119안전센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41(수내동)	분당구 정자동, 정자1·2·3동, 수내3동
	야탑 119안전센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85(야탑동)	분당구 야탑1·2·3동, 이매2동
	구미 119안전센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8(구미동)	분당구 구미동, 금곡동 일부(금곡동), 구미1동
	서판교 119안전센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88(운중동)	분당구 운중동
	119구조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2(이매동)	분당구
	119구급대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서현동)	분당구
고양 소방서	원당 119안전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	덕양구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2동, 흥도동 중 일부(성사동), 원신동 중 일부(원당동), 관산동 중 일부(관산동, 내유동)
	관산 119지역대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91(관산동)	덕양구 관산동 중 일부(관산동, 내유동)
	능곡 119안전센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48(토당동)	덕양구 능곡동, 행주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삼송 119안전센터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14(오금동)	덕양구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일부(동산동), 고양동, 흥도동 일부(원흥동), 원신동 일부(신원동), 관산동 일부(대자동)
	고양 119지역대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3-4(고양동)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일부(대자동)
	행신 119안전센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52(행신동)	덕양구 행신1·2·3·4동, 흥도동 일부(도내동)
	화전 119안전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덕은동)	덕양구 대덕동, 화전동, 창릉동 일부(용두동)
	119구조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	덕양구
	119구급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	덕양구
일산 소방서	장항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장항동)	일산동구 마두1·2동, 장항2동, 정발산동
	백석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8(백석동)	일산동구 백석1·2동
	주엽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82(주엽동)	일산서구 일산3동, 주엽1·2동
	대화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30(대화동)	일산서구 대화동, 덕이동, 가좌동
	중산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18(중산동)	일산동구 중산1·2동, 일산서구 일산1·2동, 탄현1·2동
	고봉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29(문봉동)	일산동구 고봉동
	풍동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풍동)	일산동구 풍산동, 식사동
	문화 119안전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7 (장항동)	일산서구 송포동, 일산동구 장항1동
	119구조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4(정발산동)	일산동구, 일산서구
	119구급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장항동)	일산동구, 일산서구
	중앙 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중동)	원미구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중2동·, 심곡1·2·3동
	오정 119안전센터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99(오정동)	오정구 신흥동, 오정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부천 소방서	중동 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6(중동)	원미구 중동, 소사구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괴안 119안전센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8번길 49(괴안동)	원미구 역곡1·2동, 소사동, 소사구 역곡3동, 괴안동
	원종 119안전센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79번길 41(원종동)	오정구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여월 119안전센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2 (여월동)	오정구 성곡동, 원종2동
	상동 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13(상동)	원미구 상동, 상1·2동, 소사구 송내1동
	서부 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69(중동)	원미구 중1·3동, 약대동
	범박 119안전센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27(범박동)	소사구 범박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옥길동
	신상 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 36(상동)	원미구 상3동, 중4동
	119구조대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중동)	부천시
	119구급대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46(심곡동)	부천시
안양 소방서	안양 119안전센터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5(안양동)	만안구 안양1·4·5·6·7·8동
	관양 119안전센터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3번길 6(관양동)	동안구 비산1·2·3동, 관양동
	석수 119안전센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8(석수동)	만안구 석수1·2동, 충훈동, 안양2동
	박달 119안전센터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38(박달동)	만안구 박달1·2동, 안양3·9동
	부림 119안전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32(관양동)	동안구 인덕원동, 부림동, 부흥동, 달안동,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
	귀인 119안전센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04(평촌동)	동안구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 호계1·2·3동
	119구조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1번길 56(호계동)	안양시
	119구급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32(관양동)	안양시
안산 소방서	고잔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	단원구 고잔동 일부(고잔동 1~680·산번지), 중앙동, 와동, 상록구 성포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원시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31(원시동)	단원구 초지동 일부(원시동, 초지동)
	선부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43(선부동)	단원구 백운동, 선부1·2·3동
	성곡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66(성곡동)	단원구 초지동 일부(목내동, 성곡동 시화공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신길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50(신길동)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월피 119안전센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645(월피동)	상록구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군자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45(성곡동)	단원구 초지동 일부(성곡동 시화공업단지 4단지의 다·라·마·바·사단지, 5단지의 다·라·바·사단지, 6단지의 바·사단지)
	사동 119안전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30(사동)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단원구 호수동, 고잔동 일부(고잔동 681~782번지)
	대부 119안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영전로 375(대부동)	단원구 대부동
	반월 119안전센터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48(건건동)	상록구 반월동
	상록수 119안전센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7(본오동)	상록구 일동, 이동, 본오1·2·3동
	119구조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	안산시
	119구급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	안산시
용인 소방서	역북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2	처인구 포곡읍
	모현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12	처인구 모현읍
	남사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로 13	처인구 남사읍
	구갈 119안전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74(구갈동)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영덕1·2동
	수지 119안전센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7(풍덕천동)	수지구 풍덕천1·2동, 동천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양지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46	처인구 양지면, 원삼면(사암리,좌항리,맹리,미평리)
	이동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416-2	처인구 이동읍
	보정 119안전센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2 (보정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수지구 죽전1·2·3동
	백암 119안전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247	처인구 백암면, 원삼면(고당리,가재월리,두창리,독성리,죽능리,목신리,학일리,문촌리)
	원삼 119지역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처인구 원삼면(고당리,가재월리,두창리,독성리,죽능리,목신리,학일리,문촌리)
	동백 119안전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6로 33(중동)	기흥구 구성동, 동백1·2·3동, 상하동
	기흥 119안전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28(공세동)	기흥구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성복 119안전센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47-1외 14필지	상현1·2·3동, 성복동, 신봉동
	119구조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	처인구
	제2 119구조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7(풍덕천동)	기흥구, 수지구
	119구급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	처인구
	제2 119구급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7(풍덕천동)	기흥구, 수지구
의정부 소방서	금오 119안전센터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0(금오동)	의정부1동, 신곡2동, 자금동
	흥선 119안전센터	의정부시 의정로 48(의정부동)	의정부2동, 흥선동, 호원2동
	호원 119안전센터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7(호원동)	호원1동, 신곡1동, 장암동
	송산 119안전센터	의정부시 충의로 90(용현동)	송산1·2·3동
	녹양 119안전센터	의정부시 체육로 248	가능동, 녹양동
	119구조대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금오동)	의정부시
	119구급대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금오동)	의정부시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남양주 소방서	평내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평내로 25(평내동)	평내동, 호평동, 금곡동, 양정동
	진접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5	진접읍
	진건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12-21	진건읍
	화도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60번길 25	화도읍, 수동면
	수동 119지역대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16	수동면
	와부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34-2	와부읍, 조안면
	조안 119지역대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1	조안면
	별내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별내동 송산로 41(별내동)	별내동, 퇴계원읍, 별내면
	오남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72	오남읍
	가운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가운로 16(다산동)	다산2동
	다산 119안전센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6번길 76	다산1동
	119구조대	남양주시 평내로 25(평내동)	남양주시
	119구급대	남양주시 평내로 25(평내동)	남양주시
평택 소방서	비전 119안전센터	평택시 중앙로 273(비전동)	비전1동 일부(비전동,청룡동,죽백동,월곡동), 비전2동, 신평동 일부(합정동), 용이동
	안중 119안전센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28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오성 119지역대	평택시 오성면 죽리길 29	오성면
	팽성 119안전센터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72	팽성읍
	포승 119안전센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56번길 11	포승읍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세교 119안전센터	평택시 세교동 603	세교동 일부(지제동), 비전1동 일부(동삭동), 원평동 일부(신대동)
	신평 119안전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	신평동 일부(평택동,유천동), 원평동 일부(군문동, 통복동)
	119구조대	평택시 평택로 2(합정동)	평택시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세교동, 용이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119구급대	평택시 중앙로 273(비전동)	평택시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세교동, 용이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송탄 소방서	신장 119안전센터	평택시 경기대로 1627(신장동)	중앙동 일부(서정동).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모곡 119안전센터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2(모곡동)	중앙동 일부(이충동, 장당동), 송탄동
	진위 119안전센터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30	진위면
	서탄 119안전센터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41	서탄면
	고덕 119안전센터	평택시 고덕면 고덕율포1로 46	고덕면, 고덕동
	청북 119안전센터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16	청북읍
	119구조대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2(모곡동)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청북읍, 신장1·2동, 지산동, 서정동, 중앙동, 송탄동, 송북동, 고덕동
	119구급대	평택시 경기대로 1627(신장동)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청북읍, 신장1·2동, 지산동, 서정동, 중앙동, 송탄동, 송북동, 고덕동
광명 소방서	소하 119안전센터	광명시 금하로 472(소하동)	소하1·2동, 일직동, 학온동, 하안3동
	광명 119안전센터	광명시 목감로 306(광명동)	광명1·2·3동, 철산1·2동
	하안 119안전센터	광명시 범안로 1025(하안동)	하안1·2·4동, 철산3·4동
	광남 119안전센터	광명시 목감로 34(광명동)	광명4·5·6·7동
	119구조대	광명시 금하로 472(소하동)	광명시
	119구급대	광명시 금하로 472(소하동)	광명시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시흥 소방서	시흥 119안전센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정왕본동, 정왕1·2·3동 일부(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2·3·4지역의 가 블럭에 한하며 정왕3동의 경우 오이도 지역 제외), 군자동
	은행 119안전센터	시흥시 대은로 4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일부(과림동), 매화동 일부(매화동)
	정왕 119안전센터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1(정왕동)	정왕1·2·3동 일부(시화국가산업단지 1·2·3 지역의 나·다·라·마·바블럭, 4지역의 나블럭), 거북섬동
	연성 119안전센터	시흥시 새재로 29(장현동)	연성동, 신현동, 능곡동, 장곡동
	목감 119안전센터	시흥시 목감우회로 15(조남동)	목감동, 과림동 일부(무지내동), 매화동 일부(도창동, 금이동)
	배곧 119안전센터	시흥시 서울대학로789번길 80 (배곧동)	정왕3동의 오이도지역, 정왕4동, 월곶동, 배곧1·2동
	119구조대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시흥시
	119구급대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시흥시
군포 소방서	오금 119안전센터	군포시 고산로 429(산본동)	군포1동, 군포2동(부곡동 1번지부터 325-13번지까지, 1192번지부터 1199번지까지, 1201번지부터 1219-6번지까지),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대야동, 광정동 일부(산본동 1123번지부터 산본동 1145-17번지까지)
	산본 119안전센터	군포시 산본로 432번길 1(산본동)	산본1·2동, 궁내동, 금정동, 광정동(산본동 1123번지부터 산본동 1145-17번지 제외)
	송정 119안전센터	군포시 송부로74번길 4(도마교동)	대야동, 송부동(부곡동 1번지부터 325-13번지까지, 1192번지부터 1199번지까지, 1201번지부터 1219-6번지까지 제외)
	119구조대	군포시 고산로 429(산본동)	군포시
	119구급대	군포시 고산로 429(산본동)	군포시
화성 소방서	향남 119안전센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9	향남읍, 양감면
	양감 119지역대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3	양감면
	팔탄 119안전센터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2	팔탄면
	태안 119안전센터	화성시 병점중앙로 148(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기산동, 진안동, 반정동, 능동 일부(158번지, 547번지, 444~540번지, 579-760번지, 1028번지,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1030~1041번지, 능동 산149~산170번지, 1005~1017번지, 1282~1283번지,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 관할 제외)],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일부(「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1조에 따른 지역)
	반송 119안전센터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반송동)	동탄1·2동, 동탄3동, 진안동(능동 799-814번지, 976~1001번지, 1051~1281번지)
	목동 119안전센터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359(목동)	동탄4·5·6·7·8동
	봉담 119안전센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35	봉담읍, 매송면
	매송 119지역대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 39	매송면
	남양 119안전센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48	남양읍, 마도면, 서신면
	서신 119지역대	화성시 서신면 바다뜰길 36	서신면
	비봉 119지역대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비봉면
	마도 119지역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70-4	마도면
	송산 119지역대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22	송산면
	제부 119지역대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156-5	서신면(제부리)
	정남 119안전센터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514	정남면
	장안 119안전센터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119	우정읍, 장안면
	새솔 119안전센터	화성시 새솔동 81	새솔동, 송산면, 비봉면
	119구조대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9	화성시
	119구급대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9	화성시
파주 소방서	통일 119안전센터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	문산읍, 파주읍,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파주 119지역대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425	파주읍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금촌 119안전센터	파주시 가나무로 136(금능동)	금촌1·2·3동
	법원 119안전센터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141	법원읍
	적성 119안전센터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로 1220	적성면, 파평면
	파평 119지역대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0	파평면
	광탄 119안전센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0	광탄면, 조리읍
	탄현 119안전센터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458	탄현면
	월롱 119안전센터	파주시 월롱면 LCD로 310	월롱면
	교하 119안전센터	파주시 청석로 301(다율동)	교하동, 운정5·6동
	운정 119안전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90(야당동)	운정1·2·3·4동
	119구조대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	파주시
	119구급대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	파주시
이천 소방서	관고 119안전센터	이천시 경충대로 2739(관고동)	관고동,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신둔면, 백사면
	백사 119지역대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58	백사면
	장호원 119안전센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71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설성 119지역대	이천시 설성면 설장로16번길 68-57	설성면
	율면 119지역대	이천시 율면 고당로120번길 12	율면
	대월 119안전센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73	부발읍, 모가면, 대월면
	부발 119지역대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478	부발읍
	모가 119지역대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63번길 46	모가면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마장 119안전센터	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87	마장면, 호법면
	호법 119지역대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0	호법면
	119구조대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73	이천시
	119구급대	이천시 경충대로 2739(관고동)	이천시
구리 소방서	교문 119안전센터	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46(교문동)	교문1·2동, 수택1·2·3동
	인창 119안전센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8(인창동)	인창동, 동구동 일부(인창동)
	갈매 119안전센터	구리시 산마루로 68(갈매동)	갈매동, 동구동 일부(사노동)
	119구조대	구리시 왕숙천로 570(인창동)	구리시
	119구급대	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46(교문동)	구리시
김포 소방서	중앙 119안전센터	김포시 감암로 111(걸포동)	사우동, 운양동, 김포본동, 풍무동
	통진 119안전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	통진읍, 월곶면
	월곶 119지역대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78	갈산리, 군하리, 포내리, 고양리, 고막리, 개곡리, 조강리, 성동리, 용강리, 보구곶리, 월곶면
	양촌 119안전센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85	양촌읍
	마산 119안전센터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6(마산동)	마산동, 구래동, 장기본동, 장기동
	대곶 119안전센터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104	대곶면
	고촌 119안전센터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31	고촌읍
	하성 119안전센터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404	하성면
	119구조대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8(북변동)	김포시
	수난구조대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56-1	김포관할한강수계 (전류리~가양대교 23km),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 ~ 벌말교)
	119구급대	김포시 감암로 111(걸포동)	김포시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포천 소방서	군내 119안전센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포천동, 군내면
	군내 119지역대	포천시 군내면 용두로 89	군내면 일부(용정리, 유교리, 직두리, 좌의리, 명산리)
	소흘 119안전센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182	소흘읍
	영북 119안전센터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144	영북면, 관인면
	관인 119지역대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14	관인면
	일동 119안전센터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 978	일동면, 이동면
	이동 119지역대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8	이동면
	가산 119안전센터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90	가산면
	내촌 119안전센터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20	내촌면, 화현면
	화현 119지역대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1길 51	화현면
	영중 119안전센터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66	영중면, 신북면, 창수면
	신북 119지역대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6	신북면
	창수 119지역대	포천시 창수면 옥수로 119	창수면
	선단 119안전센터	포천시 호국로 1007-33(선단동)	선단동
	119구조대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포천시
	119구급대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포천시
광주 소방서	초월 119안전센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퇴촌 119지역대	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6	퇴촌면
	송정 119안전센터	광주시 수하길 36(송정동)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남한산성면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남한산성 119지역대	광주시 남한산성로 737	남한산성면
	오포 119안전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10-5	오포1동 일부(고산동, 추자동), 오포2동
	능평 119안전센터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30	오포1동 일부(문형동), 신현동, 능평동
	곤지암 119안전센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60	곤지암읍·도척면
	도척 119지역대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676	도척면
	광남 119안전센터	광주시 고불로 277(태전동)	광남1동(장지동, 중대동, 삼동, 목동, 직동, 태전동-목리천 북단), 광남2동(태전동-목리천 남단)
	119구조대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시
	119구급대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시
안성 소방서	도기 119안전센터	안성시 미양로 855(도기동)	안성1·2·3동, 보개면, 대덕면, 고삼면
	미양 119안전센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3길 8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 119안전센터	안성시 죽산면 장원공단길 38	죽산면, 일죽면, 삼죽면
	일죽 119지역대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1	일죽면
	공도 119안전센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11	공도읍
	원곡 119안전센터	안성시 원곡면 원곡물류단지로 162-20	양성면, 원곡면
	양성 119지역대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605	양성면
	119구조대	안성시 공단2로 74	안성시
	119구급대	안성시 미양로 855(도기동)	안성시
하남 소방서	신장 119안전센터	하남시 대청로 76(신장동)	천현동, 신장1·2동, 춘궁동
	감일 119안전센터	하남시 감일백제로 77(감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덕풍 119안전센터	하남시 덕풍서로 60(덕풍동)	덕풍1·2·3동, 미사3동, 초이동
	미사 119안전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90(망월동)	미사1·2동
	119구조대	하남시 대청로 76(신장동)	하남시
	119구급대	하남시 대청로 76(신장동)	하남시
의왕 소방서	고천 119안전센터	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	고천동, 오전동
	부곡 119안전센터	의왕시 오봉로 289(삼동)	부곡동
	백운 119안전센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187(청계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119구조대	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	의왕시
	119구급대	의왕시 경수대로 344(오전동)	의왕시
양주 소방서	백석 119안전센터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56	백석읍
	회천 119안전센터	양주시 화합로 1272(회정동)	회천1·2·3동
	광적 119안전센터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55	광적면
	고읍 119안전센터	양주시 고덕로 266(고읍동)	양주1·2동
	남면 119안전센터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247	남면, 은현면
	은현 119지역대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66	은현면
	장흥 119안전센터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794	장흥면
	옥정 119안전센터	양주시 옥정로8길 52(옥정동)	옥정1동, 옥정 2동
	119구조대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56	양주시
	119구급대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56	양주시
오산 소방서	세교 119안전센터	오산시 문헌공로 30(내삼미동)	세마동, 신장동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청학 119안전센터	오산시 청학로 55-6(청학동)	남촌동, 초평동
	원동 119안전센터	오산시 경기대로 99(원동)	중앙동, 대원동
	119구조대	오산시 운암로 77(오산동)	오산시
	119구급대	오산시 문헌공로 30(내삼미동)	오산시
여주 소방서	월송 119안전센터	여주시 우암로 110(월송동)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 세종대왕면
	흥천 119지역대	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154	흥천면
	산북 119지역대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93	산북면
	세종대왕 119지역대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913	세종대왕면
	가남 119안전센터	여주시 가남읍 일신로 32	가남읍, 점동면
	점동 119지역대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00	점동면
	북내 119안전센터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440	북내면, 대신면, 강천면
	강천 119지역대	여주시 강천면 긴등길 5	강천면
	대신 119지역대	여주시 대신면 율촌2길 3	대신면
	금사 119안전센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303-3	금사면, 흥천면, 산북면
	119구조대	여주시 우암로 110(월송동)	여주시
	119구급대	여주시 우암로 110(월송동)	여주시
양평 소방서	공흥 119안전센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	양평읍 일부(양근리, 공흥리, 오빈리, 원덕리, 신애리, 덕평리, 백안리, 대흥리, 봉성리), 개군면, 옥천면
	개군 119지역대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39	개군면
	옥천 119지역대	양평군 옥천면 옥천체육공원길 68	옥천면
	강상 119안전센터	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54	양평읍 일부(회현리, 창대리, 도곡리), 강상면, 강하면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강하 119지역대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8	강하면
	용문 119안전센터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64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청운단월 119통합지역대	양평군 청운면 백동길 1-25	단월면, 청운면
	지평 119지역대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116번길 1	지평면
	양동 119지역대	양평군 양동면 양서북로 80	양동면
	양서 119안전센터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43	양서면
	119구조대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	양평군
	수난구조대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619	팔당댐～청평댐간 (북한강), 팔당댐～앙덕나루간 (남한강), 팔당댐～아래무수리기간 (경안천), 서종면
	119구급대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	양평군
동두천 소방서	불현 119안전센터	동두천시 지행로 6(지행동)	생연1·2동, 보산동, 상패동, 불현동, 중앙동, 송내동
	광암 119지역대	동두천시 삼육사로1269번길 9	불현동, 보산동
	소요 119안전센터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65(상봉암동)	소요동
	119구조대	동두천시 지행로 6(지행동)	동두천시
	119구급대	동두천시 지행로 6(지행동)	동두천시
과천 소방서	중앙 119안전센터	과천시 통영로 12(중앙동)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문원동 일부(문원동)
	과천 119안전센터	과천시 궁말로 30(주암동)	과천동, 문원동 일부(막계동)
	119구조대	과천시 통영로 12(중앙동)	과천시
	119구급대	과천시 통영로 12(중앙동)	과천시
가평 소방서	가평 119안전센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	가평읍 일부(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산유리 제외), 북면
	북면 119지역대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8-6	북면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조종 119안전센터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14	상면, 조종면
	설악 119안전센터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7	청평면 일부(호명리, 고성리 제외), 설악면
	청평 119지역대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1037	청평면 일부(호명리, 고성리 제외)
	119구조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	가평군
	수난구조대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580	청평댐～월두봉 도계간(내수면), 가평읍 일부(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산유리), 청평면 일부(호명리, 고성리)
	119구급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	가평군
연천 소방서	은대 119안전센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	전곡읍 일부(은대리, 신답리)
	전곡 119안전센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27	전곡읍 일부(전곡리, 고능리, 마포리, 양원리, 간파리, 늘목리), 청산면
	청산 119지역대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21-4	청산면
	연천 119안전센터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92	연천읍, 신서면
	신서 119지역대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34	신서면
	백학 119안전센터	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길 16	백학면, 장남면, 미산면
	군남 119안전센터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486-4	군남면, 왕징면, 중면
	119구조대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	연천군
	119구급대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	연천군

소관 실·국		기획조정실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담당관 김정민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윤영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박영진(8008-409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① (생 략) ② 도지사의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대외협력보좌관을 두고, 도정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수석을 두며, 도정 정책 발굴 및 공약이행 성과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회경기수석을 두고, 경제부지사의 의회 협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을 두며, 주요 도정 및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치1보좌관 · 협치2보좌관을 두고, 정책수석 · 대외협력보좌관 · 행정수석 · 기회경기수석 · 정무수석 · 협치1보좌관 · 협치2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두고,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특보를 두며, 경제부지사---------- 두고, 주요 도정---------- 두며, 정책수석 · 대외협력보좌관 · 행정수석 · 기회경기수석 · 국제협력특보 · 정무수석 · 협치1보좌관 · 협치2보좌관----------.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 ① ~ ③ (생 략)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 · 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	3. --------- 계획 수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민간 투자유치 및 경제 · 산업 · 교통 인프라 등 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	5. ---------- 기반시설 ----------
6.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 토론회, 워크숍 등---------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7조(홍보기획관) ① ~ ③ (생략)	제7조(홍보기획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6.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6.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제작에 관한 사항 7.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9.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에 관한 사항 15.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17.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 삭제	7. 실·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9.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22.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경기도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실ㆍ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⑤ ----------. 1.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고제작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5.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광고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12. 광고제작·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15.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8.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광고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11.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3.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에 관한 사항 21.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23.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25.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6.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 략) ⑤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1의2.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17. (생 략) ⑥ ~ ⑫ (생 략)	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17. (현행과 같음)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실) ① 안전관리실에 안전기획과 ·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과 · 안전특별점검단 · 북부안전특별점검단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둔다. ②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안전기	제9조(안전관리실) ① ---------- 안전기획과 ·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과 · 안전특별점검단 · 북부안전특별점검단 · 특별사법경찰단----------. ② ---------- 안전기획과장 · 사회재난과장 · 자연재난과장 · 안전특별점검단

획과장 · 사회재난과장 · 자연재난과장 · 안전특별점검단장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장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 특별사법경찰단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특별사법경찰단장----------.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4.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정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과학적 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7. 불공정 범죄 신고 · 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8.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압수수색 · 조사 및 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9.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미스터리쇼핑 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2.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4.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9.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정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불공정 범죄 신고·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압수수색·조사 및 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14.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미스터리쇼핑 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실) ① ~ ④ (생 략) ⑤ 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 16. (생 략) <신 설> 17. (생 략) ⑥ (생 략)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10조(도시주택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 ~ 16. (현행과 같음) 17.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분장한다.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신 설>	35.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건건강국) ① ~ ③ (생략)	제14조(보건건강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0.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14. 삭 제	
15.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삭 제>

16. ~ 35. (생 략)	16. ~ 35. (현행과 같음)
⑤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한의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7.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종무과·콘텐츠산업과·예술정책과·체육진흥과·문화유산과·관광산업과를 둔다.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① ---------- 문화정책과·종교협력과·콘텐츠산업과·예술정책과·체육진흥과·문화유산과·관광산업과--------.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종무	② ---------- 문화정책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콘텐츠산업과장 · 예술정책과장 · 체육진흥과장 · 문화유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과장 · 종교협력과장은 각각 ----------.
③ 문화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문화정책과장----------.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종무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전통사찰의 지정 · 지원 ·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8.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9.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20.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	<삭 제>

에 관한 사항	
21. 유교, 향교, 민족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4.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25. 그 밖에 종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25의2. (생 략)	26. (현행 제25호의2와 같음)
<신 설>	27.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6. (생 략)	28. (현행 제26호와 같음)
<신 설>	④ 종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사찰의 지정·지원·보

	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유교, 향교, 민족종교 및 기타 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종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④ ~ ⑧ (생 략)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31조(소방재난본부) ① · ② (생 략)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1조(소방재난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3. (현행과 같음) 14. 소방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경기소방 역사사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3. ---------- 관리----------
4.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예방소방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2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제외)	21. ---------- ------- 사항
22. · 23. (생 략)	22. · 2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생활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활동 방해 행위 지도·단속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6. 삭 제	
7. 기초 소방시설(주택·공공시설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7.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
8. ~ 21. (생 략)	8. ~ 21. (현행과 같음)
⑪ 회계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방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교통사고 포함)	12. ---------- 사항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북부소방재난본부) ① ~ ③ (생 략)	제31조의2(북부소방재난본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 관리----------
4.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예방소방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21.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2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3. 기초 소방시설 (주택·공공시설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2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
24. ~ 32. (생 략)	24. ~ 32. (현행과 같음)
33.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3.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처리---
34. ~ 38. (생 략)	34. ~ 38. (현행과 같음)
⑤ 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⑤ ----------

장한다.	-.
1. ~ 43. (생 략)	1. ~ 43. (현행과 같음)
<신 설>	44.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4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44. (생 략)	46. (현행 제44호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제46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1. 화재예방, 안전관리-------관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예방소방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기초 소방시설 (주택 · 공공시설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119안전센터 등) ① (생략)	제47조(119안전센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19안전센터장 및 119구조대	② ----------

·119구급대장(이하 “119안전센터장등”이라 한다)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단서 신설>	----------. 다만,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6(하부조직) ① 국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팀,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을 둔다.	제47조의6(하부조직) ① ---------- 운영지원팀----------.
② 체험지원팀장, 체험기획팀장, 체험운영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② 운영지원팀장----------.
③ 체험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운영지원팀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가축방역팀·질병진단팀·축산물성분분석팀·바이오연구팀·해외전염병팀·ASF대응팀·축산물검사팀·가금검사팀·조류질병대응팀·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제54조(하부조직) ① ---------- 행정지원팀·가축방역팀·질병진단팀·해외전염병팀·ASF대응팀·조류질병대응팀·바이오연구팀·축산물성분분석팀·축산물검사팀·가금검사팀·서부축산물검사소---------.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② ----------

가축방역팀장 · 질병진단팀장 · 축산물성분분석팀장 · 바이오연구팀장 · 해외전염병팀장 · ASF대응팀장 · 축산물검사팀장 · 가금검사팀장 · 조류질병대응팀장 ·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가축방역팀장 · 질병진단팀장 · 해외전염병팀장 · ASF대응팀장 · 조류질병대응팀장 · 바이오연구팀장 · 축산물성분분석팀장 · 축산물검사팀장 · 가금검사팀장 · 서부축산물검사소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⑩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 ⑨ (생 략)	⑥ · ⑦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⑩ · ⑪ (생 략)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⑫ (생 략)	⑧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조항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붙임 2 현행규정 발췌서 (관련조항 발췌)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② 도지사의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대외협력보좌관을 두고, 도정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수석을 두며, 도정 정책 발굴 및 공약이행 성과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회경기수석을 두고, 경제부지사의 의회 협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을 두며, 주요 도정 및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치1보좌관 · 협치2보좌관을 두고, 정책수석 · 대외협력보좌관 · 행정수석 · 기회경기수석 · 정무수석 · 협치1보좌관 · 협치2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한다.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 ④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법령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 · 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
4. 경기국제공항 배후단지 기획 · 건설에 관한 사항
5. 민간 투자유치 및 경제 · 산업 · 교통 인프라 등 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경기국제공항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홍보기획관)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7.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9.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 확산에 관한 사항
15.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17.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 삭제
21.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22.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경기도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실 · 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12. 광고제작 · 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15.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8.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광고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 ⑤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정책 발굴・조정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의2. 기회 정책 개발,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창의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지사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BSC) 및 4급 이상 성과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합동평가 및 시 · 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1.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14.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 가치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17.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실) ① 안전관리실에 안전기획과 ·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과 · 안전특별점검단 · 북부안전특별점검단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둔다.

②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안전기획과장 · 사회재난과장 · 자연재난과장 · 안전특별점검단장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⑧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 · 수사에 관한 사항
2.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 · 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시군 직무파견, 직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법률자문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9.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설치된 수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무분야별 단속 · 수사 실적 및 통계 관리와 통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1.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법률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 수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 · 수사에 관한 사항
2.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 · 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4.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정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불공정 범죄 신고 · 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압수수색 · 조사 및 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14.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미스터리쇼핑 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실) ⑤ 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삭제
2. 도시기획 · 지역계획 · 도시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권역별·생활권별 공간전략 및 발전방안 구상
7. 개발가용지 분석·관리 및 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지역개발 및 지원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협의
12.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온천업무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 관련 기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사항 검토 등 도시계획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7. 공간정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에 관한 사항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도지사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적관리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유토지분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개발업 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경기도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26.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8.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측량업(일반, 공공, 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명의 제정 · 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
33. 토지정보 통합 백업 시스템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건강국) ④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거점병원 관리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1.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관련 신속대응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17. 만성질환(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 · 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
20. 급성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1.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
22.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삭제
25. 경기도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타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8. 보건환경연구원 지도 · 감독(보건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29. 질병정책과 소관분야 비영리 사단 · 재단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국가 격리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만성질환(한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한센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3. 말라리아퇴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공수병 관리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기 판매업·수리업 등에 관한 사항
14. 헌혈,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
15. 국제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17.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9.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의료관광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1. 해외 나눔의료에 관한 사항
21의2.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관한 사항

22. 충무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삭제
25. 보건의료과 소관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6. 보건의료과 소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리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발생 감시ㆍ분석 및 정보환류에 관한 사항
4. 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담당자, 도민 교육ㆍ홍보 및 훈련 등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위기 시(주의단계 이상) 즉각 대응조직 전환에 관한 사항
9.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2. 집단설사환자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종무과ㆍ콘텐츠산업과ㆍ예술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종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콘텐츠산업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문화유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문화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 조정 ·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어문화 활성화 및 수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기반시설(공연시설 제외)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9.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경기상상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기문화재단(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제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홍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종무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6.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통사찰의 지정 · 지원 ·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유교, 향교, 민족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2.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3.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종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의2. 도자산업 육성 및 한국도자재단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절 소방재난본부

제31조(소방재난본부) ④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예방소방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14.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16. 위험물 저장 · 취급에 대한 출입 ·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8.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제외)

22. 예방분야 법률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대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119안전센터 · 지역대의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지도 · 감독

4.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 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 · 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14. 재난현장 정보전달 체계 활용 · 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긴급구조대응계획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18.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9.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22.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4.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6. 의용소방대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27.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해임 등에 관한 사항
28.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9.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30.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31.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3. 화재조사 및 감식 · 감정 등에 관한 사항
34.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생활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방해 행위 지도 · 단속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기본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위험요소 발굴 ·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기초 소방시설(주택 · 공공시설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8.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홍보 · 행사기획 및 도민 안전소통에 관한 사항
11. 대외발표 및 언론 브리핑, 보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방사무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소방박물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 · 처리에 관한 사항

⑪ 회계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교부세,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자금관리,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 등)에 관한 사항
2의2. 급여 등 지급 ·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 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소방 공유재산, 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관서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 · 용역, 물품 · 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도내 소방청사 등의 공사(신축 · 이전 · 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8. 도내 소방청사 등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소방피복 · 차량 · 장비 등의 구매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교통사고 포함)
13. 소방장비 운용 및 운용자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운전분야 포함)
14.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의 처분 등에 관한사항
16.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관련 대책 마련(보험 등)에 관한 사항
17.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소방복제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북부소방재난본부) ④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예방소방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 저장 · 취급에 대한 출입 ·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8.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9. 생활안전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 위험요소 발굴 ·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1.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2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23. 기초 소방시설 (주택 · 공공시설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24.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5. 소방사무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 지원에 관한 사항

26. 안전교육 · 체험에 관한 사항
27.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9.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한 사항
30. 홍보 · 행사 및 도민 안전소통에 관한 사항
31. 언론보도 및 언론기관과의 협력 · 지원 · 대응에 관한 사항
32. 소방박물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35.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위반사범 수사 등에 관한 사항
37. 예방분야 법률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8. 그 밖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⑤ 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안전센터 지역대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
6.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9.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해임 등에 관한 사항
12.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3.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14.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16. 소방용수시설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9. 시 · 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20. 재난현장 정보전달체계 활용 · 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 · 감독
21. 화재증감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2.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3.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
24. 화재조사 및 감식 · 감정 등에 관한 사항
25.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26.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27.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30.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2.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33. 구조 · 구급에 관한 사항
34.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 ·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5. 구조 ·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36. 구조 · 구급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7. 구조 ·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8.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39. 특수재난사고 대책의 수립 ·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0. 대테러 인명구조 및 예방 ·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1. 국지도발 긴급대응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소방분야에 한함)
42. 미래 · 신종재난 전망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43. 국내외 대형 · 복합재난의 사례수집 및 분석 · 전파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2절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제53조(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 · 가축방역팀 · 질병진단팀 · 축산물성분분석팀 · 바이오연구팀 · 해외전염병팀 · ASF대응팀 · 축산물검사팀 · 가금검사팀 · 조류질병대응팀 · 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 · 질병진단팀장 · 축산물성분분석팀장 · 바이오연구팀장 · 해외전염병팀장 · ASF대응팀장 · 축산물검사팀장 · 가금검사팀장 · 조류질병대응팀장 ·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 · 문서 · 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 회계 · 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3.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
2.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3.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⑥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바이오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
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⑨ ASF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관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⑩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축검사(포유류)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⑪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⑫ 조류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가금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⑬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천 · 김포 관내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